

출장복명서

- 시장화테스트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 관련
일본 내각부 및 와세다대학교 방문 -

2012. 10.

I.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시장화테스트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 시장화테스트(공공서비스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국가기관(내각부 공공서비스개혁 추진실 관민경쟁입찰 등 감리위원회 사무국)을 방문하여 시장화테스트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절차와 기준, 제도에 대한 내용을 질의·논의하고자 함.
 - 「官民競争入札等監理委員會」의 감리위원인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술원 코바야시 야나기 마리 교수를 방문하여 시장화테스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일본의 경험에 대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고자 함.

☐ 출장자

- 공공투자관리센터 이종연 부연구위원, 임영빈 연구원

☐ 출장기간

- 2012년 9월 24일(월) ~ 2012년 9월 25일(화)
 - 2012년 9월 24일(월) 오전 : 김포 출발, 일본 동경 하네다 도착
 - 2012년 9월 24일(월) 오후 : 와세다대학교 정치경제학술원 코바야시 야나기 마리 교수 방문 및 의견 청취
 - 2012년 9월 25일(화) 오후 : 내각부 공공서비스개혁 추진실 관민경쟁입찰 등 감리위원회 사무국 방문
 - 2012년 9월 25일(화) 오후 : 동경 하네다 출발, 김포 도착

II. 회의 내용

■ 시장화테스트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질의(9월 24일(월))

1. 회의 주제 : 시장화테스트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의견 청취 및 질의
2. 일시 및 장소 : 9월 24일(월) 14:00~, 와세다대학교 26호관 14층 1408호
3. 회의주관책임자 : 한국개발연구원 이종연 부연구위원
4. 회의 참석대상 및 인원 :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술원 코바야시 야나기 마리 교수 외 2인
5. 회의내용 :

□ 시장화테스트에 대한 개요

- 최근 일본에서는 공공의 사업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의 창의와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고품질의 이익을 제공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시각에서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개혁법을 제정하였음.
- 공공서비스개혁법은 관민경쟁입찰 등 감리위원회의 설치 및 그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감리위원은 관민경쟁입찰 등의 실시 등에 대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절차(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적절히 관여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주로 관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외부지식인을 위원으로 임명하여 공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관민경쟁입찰 등(시장화테스트)은 2006년에 도입되어 2012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코바야시 마리 교수의 경우 초기에서부터 「관민경쟁입찰등감리위원회」의 감리위원으로 참여하여 공공서비스 개혁을 위해 노력하여왔음.
- 시장화테스트에 대한 적용 절차는 약 1년에 걸쳐 결정되며 내각에서 제시한 실시요항을 작성하여 관-민 또는 민-민의 경쟁입찰을 유도함.
 - 시장화테스트의 각 단계에 「제3자 기관」인 감리위원회가 참여하여 평가하므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시장화테스트 초기단계(2006년) 시 재단에 의해 운영되는 공익법인에 대한

경쟁입찰도입을 위해 감리위원회는 다양한 노력을 취하였음.

- 일본의 공공기관 중의 하나인 공익법인은 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재단의 이사장 또는 임원은 관료로부터의 낙하산 인사에 의해 임용되기 때문에 공익법인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존재하여 왔으며 투명성에도 문제점이 도출되어 왔음.
- 이를 시장화테스트에 근거하여 경쟁을 도입함에 있어 낙하산 인사에 의해 임명된 임원의 저항이 거세었으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정보 공개의 관점에서도 비협조적이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감리위원회에서는 2~3회에 걸쳐 경쟁도입효율화방안을 미디어에 공개하여 정치적인 압박을 가했으며 결과적으로 관-민 경쟁구도를 이끌어내었음.

□ 시장화테스트의 제약요건

- 2006년 시장화테스트를 추진하면서 관련기관의 많은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리더십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시장화테스트는 관-민/민-민의 경쟁에 의한 구도이며 경쟁을 하되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데 그 주안점이 있는데, 즉 ①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②비용 면에서 우위를 획득하고자 하였음.
- 이는 시장화테스트를 활용하여 공공 서비스 실시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창의와 효율성을 활용함에 따라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저렴한 공공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함임.
- 하지만, 초기 공공부문에서는 그들이 가진 서비스의 질과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서비스 제공 수준 등과 같은 사안 역시 이를 측정하거나 평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음.
- 이러한 반발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기준마련, 관-민 경쟁 입찰 등에 대한 선정 Level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감리위원회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정치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게 하였음.
- 관민경쟁입찰 등 감리위원회는 「경쟁의 도입에 따른 공공서비스 개혁에 관한 법률」이 목표하는 공공서비스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법에 의해 그 지위가 부여되었으며 임기는 3년이고 제1기는 법의 시행에 따라 평성 18년(2006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제2기는 2012년 7월에 그 임기가 마무리되었음.

□ 시장화테스트의 적용 절차 및 기본방침

- 시장화 테스트는 대상사업 선정에서부터 이루어지며 실시요항의 결정 및 공표, 입찰의 실시 및 낙찰, 계약체결·사업개시, 사업검증, 향후의 방향성 결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임.
 - 단, 모든 추진절차에 있어 중립적인 제3자 기관인 「관민경쟁입찰 등 감리위원회」가 투명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하여 원활한 진행에 기여하고 있음.
 - 따라서 관민경쟁입찰의 대상조직·사업의 선정 프로세스의 검토에 있어 무엇보다도 각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행정개혁(조직·정원·업무재검토)과 연계시키는 일이 중요함.
 - 아울러 사업자는 관민경쟁입찰의 결과를 보면서 직원의 삭감·재배치 및 민간 위탁을 위한 예산조치 등을 행할 필요가 있으나, 입찰 실시년도의 익년도에 사업을 실시하는 작업공정은 예산과 인사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입찰실시년도의 익년도에는 예산조치·인사조치를 행하고, 그 후 년도에서부터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는 입찰·사업실시를 제시해 둘 필요가 있음.
- 감리위원회 위원들이 자신들의 전문분야에 부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분과회를 조직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 코바야시 교수는 입찰관리 소위원회의 주사(長)를 맡고 있으며 제안된 案에 대하여 실시요항을 기본방침에 따라 이를 평가하고 있음.
 - 분과회 또는 소위원회에는 필히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분야 별 전문가인 전문위원 및 내각부의 관료가 사무국장으로 참여하여 분과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입찰관리 소위원회에서는 각 성청에서 실시평가를 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요항의 기본방침에 의거하여 평가(안)을 제시하며 이를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내각부에 제출함.
- 내각부에서는 감리위원회의 평가를 근거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지만, 감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거의 100% 수용하고 있으며, 관료의 의지에 따라 그 결과가 바뀌는 일은 없음.

□ 시장화테스트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지의 여부

- 시장화테스트의 실시요항(안)에 관한 심의를 감리위원회에서 수행함.
-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1회의 Public Comments를 받아 경쟁도입에 대한 강제성을 낮추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함.
- 상기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2차 심의회를 가짐.

□ 시장화테스트의 대표적 사업 추진사례

- 국제교류회관의 시장화테스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들 수 있음.
- 국제교류회관은 낙하산 인사에 의한 재단에 의해 운영되어 왔으며 초기 가동률은 20%였음.
- 이에 시장화테스트를 도입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한 결과 30%대로 가동률이 상승하게 되었음.
 - 시장화테스트에 따른 방법론은 ①가동률 기준, ②인센티브 제공, ③서비스 수준에 있음.
 - ①가동률의 경우 시장화테스트 도입 이전 20%에서 30%대로 증가하였음.
 - ②인센티브는 초기에 서비스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의 이익에 대해서는 국가와 서비스 제공자가 50:50으로 나누도록 하였음.
 - ③서비스 수준은 실시요항에 제시한 바와 같이 표준화된 지침을 근거로 평가하였음.

□ 시장화테스트를 추진함에 있어 어려운 점

- 무엇보다도 힘든 점은 감리위원으로 참여한 2006년부터 2012년에 이르기 까지 매번 관계기관과 싸워야만 하는 점이었음.
- 또한, 예산 결정과 같은 국가부처의 사정에 따라 감리위원회의 평가기간이 짧아지게 되어 1사업자가 응찰되는 경우도 있었음.
- 공항 유지·관리의 일부로서 등화 및 활주로 사업의 경우 기존사업자 및 재단법인 등이 과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낙찰률이 높아서 효율적인 시장화테스트가 불가능한 실정임.
 - 복수의 응찰자 육성을 통해 낙찰률을 낮추면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음.

- 임야청에서 기존에 수행하여 왔던 국유림의 관리에 대해 시장화테스트를 수행한 사례도 있음.
- 현재 국유림은 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정책적으로 민간 사업자를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생태계 및 희귀생물 등의 관리가 민간이 수행하기에는 위험이 크며 비용 면에서도 비효율적이지만 관과 민의 위험분담을 통한 국유림 관리의 필요성을 국가에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시장화테스트의 규모

- 시장화테스트 규모로 가장 큰 사업은 후생노동성에서 경쟁 입찰을 한 120억 엔의 각 성청(정부조직)의 정보시스템 관리 사업이었음.
- 이는 단말기를 포함한 일련의 시스템을 일괄조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래의 단일사업자가 독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
- 감리위원회에서는 분리조달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요구하였으나 설계 단계에서부터 추진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후생노동성의 의견이 있었음.
- 이에 감리위원회는 내각부의 윗선에 의견을 제시하여 분리조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였음.

□ 시장화테스트의 의의

- 시장화테스트를 통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음.
- 2006~2012년에 총 263개 사업이 시장화테스트에 따라 경쟁입찰을 하였으며 약 204억엔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였음.
- 시장화테스트 평가는 위탁 전 국가의 Cost(인건비 및 제잡비)와 낙찰된 가격을 비교하여 그에 따라 평가하도록 함.

■ 시장화테스트 관련 내각부 방문 및 질의(9월 25일(화))

1. 회의 주제 : 시장화테스트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내각부 방문 및 의견청취
2. 일시 및 장소 : 9월 25일(화) 14:00~, 내각부 공공서비스개혁 추진실
3. 회의주관책임자 : 한국개발연구원 이종연 부연구위원
4. 회의 참석대상 및 인원 : 내각부 공공서비스개혁 추진실 참서관보좌
미츠이 사토시, 타카하시 다이
5. 회의내용 :

□ 경쟁도입에 따른 공공서비스개혁법 성립의 배경

- 「規制改革・民間開放推進3か年計画」(2005)에 따라 시장화테스트(관민경쟁입찰제도・민간경쟁입찰) 도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
- 공공서비스개혁법은 2006년 7월에 시행되었으며, 기존제도(PFI, 지정관리자제도, 구조개혁특구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한된 재원에서 공공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추진되어짐.
- 관민경쟁입찰 등은 관민경쟁입찰과 민간경쟁입찰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시장화테스트라고 명기하고 있음.
- 공공서비스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공공(관)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관에 의한 사업 또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자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함.
- 단, 이 때 기존에 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하여 관-민, 민-민 경쟁입찰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 국한하여 경쟁입찰을 가짐.
 - 관민경쟁입찰 : 관이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관과 민이 경쟁함.
 - 민간경쟁입찰 : 관이 경쟁입찰에 참가하지 않고(관은 부전패), 민간사업자만이 경쟁에 참여하는 구조

□ 공공서비스개혁법 상의 조치

- 공공서비스 개혁법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서비스를 맡기 위한 법률상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제5장 법령의 특례 중 제32~24조의 공무원의 업무로 규정된 사안이 법령으로 민간의 위탁 참여가 가능해진 것이 특징적임.
 - 본 법령의 특례로 인해 기존에 공무원이 제공하던 행정서비스 역시 관민 경쟁입찰 등의 대상이 됨.
 - 이에 따라 제32조 직업안정법의 특례를 근거로 Hello Work¹⁾의 추진이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제33조 국민연금법 등의 특례에 의한 납부수탁업무 실시, 제33조의 2항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상의 특례에 의거 등기업무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
 - 아울러 제33조의 3항에 따라 형사수용시설의 일부 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해짐.
 - 기존의 부동산등기법에는 국가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로서 갑호(甲号)사무(등기신청등의 사건처리)와 을호(乙号)사무(등기사항증명서 등의 교부에 관련된 사무, 등기부 등의 열람에 관한 사무)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을호사무에 한하여 민간경쟁입찰을 통해 위탁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됨.
 - 이 때, 민간직원은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공무원에 준하는 의무를 지님.
 - 공공서비스개혁법 제33조 3항에 게재된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특례에 따르면 전국의 형사시설에 대하여 업무의 민간위탁이 가능해짐.
 - 이 때, 형사시설의 특성 상 공권력의 행사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특정 공공서비스(시설의 경비, 직업훈련, 교정교육, 수용감시, 건강진단 등)와 일반 공공서비스(식사의 제공, 세탁, 총무계의 사무, 청소) 등은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지역의 고용 창출을 낳을 수 있음.
 - 현재, 미쓰이 물산에 공공서비스 부분의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음.

1) Hello Work는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제공하는 구인·구직을 알선하는 고용지원센터로 일본 내국인과 일본 체류 외국인에게까지 고용안정을 지원·서비스하고 있음.

□ 관민경쟁입찰 등의 실시 절차

- 관민경쟁입찰 등의 실시 절차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음.
 - ①의견모집: 민간제안 및 민간에의 의견 요청을 통한 수렴
 - ②대상사업결정: 「공공서비스개혁 기본방침」(각의결정)에 따라 선정하고 있으며 9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선정과정을 거침.
 - ③실시요항 결정·공표: 실시요항은 입찰에 대한 모집정보를 설명한 것으로 관민경쟁입찰 등 감리위원회에서 지침으로 제공하고 있음. 본 과정은 약 3~4개월에 걸쳐 이루어짐.
 - ④입찰의 실시·낙찰: 약 2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진행됨.
 - ⑤계약체결·사업개시
 - ⑥사업검증: 내각부에서 이루어지는 사후평가
 - ⑦향후의 방향성 결정: 사업의 성과에 따라 ②의 과정으로 환류할 수 있음.
- 모든 실시 프로세스에 있어 제3자 위원회(관민경쟁입찰등감리위원회)에 따른 투명성·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에 따른 대상사업의 선정

- 관민경쟁입찰 등의 대상사업은 감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의에서 결정하도록 함.
 - 매년 적어도 1회는 공공서비스개혁 기본방침개정안에 대하여 각의에서 결정함.
- 공공서비스 개혁 기본방침은 공공서비스 개혁에 관한 정부 각 조직의 공통된 지침이며, 폐지 또는 관민경쟁입찰, 민간경쟁입찰에 대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민간 제안 등의 의견을 포함하여 기본방침을 개정, 공공서비스에 대한 재검토, 대상사업을 확대하였음.
- 이 때 필요에 따라 「법령의 특례」를 추가하였음.
- 2006년 9월 7개의 사업에서 2012년 7월 현재 누계 263사업으로 시장화테스트 대상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주된 사업으로 등기, 연금보험료 수납, 형사시설, 통계조사, 경찰통신, 국유림 및 도시공원 관리, 도로, 하천, 댐, 항만, 공항시설 등 공물관리, 시설

관리 및 운영, 행정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독립행정법인의 일 등이 시장화 테스트의 대상사업으로 확대되었음.

- 단, 관민경쟁입찰은 총 263개 사업 중 4사업으로 내각부 나가타쵸 합동청사, 국민생활센터에서 실시하는 기업·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일본무역진흥기구의 비즈니스 라이브러리 운영업무, 아시아경제연구소도서관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여부를 관과 민이 경쟁 입찰하는 것이었음.

□ 실시요항의 책정·사업실시·실적평가

- 관민경쟁입찰 등(관민경쟁입찰, 민간경쟁입찰)은 입찰참가자에 따른 양질의 제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찰에 관한 모집정보의 설명서(실시요항)을 사전에 공표함.
 - 실시요항은 ①대상사업의 상세한 내용 및 그 실시에 대하여 확보되어야 할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관한 사항, ②실시기간에 관한 사항, ③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④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모집에 관한 사항, ⑤대상 공공서비스를 실시하는 자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의 기준 및 그 외 대상 공공서비스를 실시하는 자를 결정하기 위한 사항, ⑥관민경쟁입찰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관민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과의 사이에 관민경쟁입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정보의 교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등을 담은 사항, ⑦대상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실시상황에 대한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⑧공공서비스 실시민간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구체적인 내용은 「관민경쟁입찰 및 민간경쟁입찰의 실시요항에 관한 지침」(관민경쟁입찰등감리위원회, 2012.04.03)에 규정되어 있음.
- 특히 시장화서비스를 추진함에 있어 관과 민, 민과 민의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가격 등을 평가함에 있어 기존에 추진된 「등기부등의 공개에 관한 사무(乙号事務)」의 실시요항을 살펴보면 6. 위탁업무를 실시하는 자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의 기준을 알 수 있음.
 -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위탁업무의 목적에 부합하게 실행 가능한 것인가(①필수항목심사)와 효과적인가(②가점항목심사)에 관하여 행해짐.
 - 필수항목심사는 필수항목(최저한의 요구항목)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모두 만족하는 경우 합격으로서 기초점인 300점을 부여하고 단 1항목이라고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함.

- 가점항목심사는 필수항목심사를 합격한 제안서의 내용에 대하여, 그 이외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고, 위탁업무의 목적 및 내용을 참조하여 그 회가가 기대되는가를 각 항목에 표시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고 가점(최고 300점)을 부여함.
- 단, 낙찰자의 결정에 있어 필수항목심사와 가점항목심사의 점수 합계점을 입찰가격으로 보고 있으나 해당낙찰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6할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행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여 조치할 수 있음.
- 즉, 시장화서비스의 목적이 민간의 창의를 도입하고,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의 질 향상, 가격적인 면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도 예정가격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가격과 서비스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임.

□ 관민 경쟁입찰 등 감리위원회(官民競爭入札等監理委員會)

- 경쟁의 도입에 따른 공공서비스 개혁의 실시과정에 대하여 그 투명성,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로서 관여하는 관민경쟁입찰 등 감리위원회를 내각부에 설치함
- 관민경쟁입찰·민간경쟁입찰 또는 폐지의 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선정함.
 - 즉, 「공공서비스개혁 기본방침」의 심의가 이루어짐.
- 관민경쟁입찰 등의 대상사업 등의 구체적인 내용, 확보해야만 하는 서비스 수준, 낙찰자 선정의 평가 기준 등을 포함한 「실시요항」을 심의함.
- 관민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관련된 평가에 대하여 심의, 단 민간경쟁입찰의 경우 감리위원회에서 관여하지 않음.
 - 즉, 기획서의 평가에 대하여 관민경쟁입찰의 경우 내각부(감리위원회)의 관여가 필요함.(내각부제공자료 p.40)
- 관민경쟁입찰 등 감리위원회 산하에는 소위원회가 있으며 각 소위원회는 감리위원들이 주사(장) 또는 부주사로 전문분야 별로 참여하고 있음.
- 공공서비스개혁 소위원회에는 시설연수 등 분과회와 공물관리 등 분과회로 나뉘어져 신규 사업들에 대하여 시장화테스트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음.
- 입찰감리소위원회는 A/B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외 지방공공서비스

소위원회가 있음.

- 본위원회의 경우 1개월에 1회 개최되며 소위원회는 주2회 개최되고 있음.
 - 소위원회는 2012년 현재 약 230회 개최되었음.
- 감리위원회 개최를 위한 제반 비용은 내각부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감리위원의 경우 소위원회 및 본위원회 참여 시 일당제(비상근제)로 약 1~2만엔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 기타사항

- 입찰에 관한 평가 시 가격 면에 있어 정량화된 분석기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
 - 가격 비교는 기존 관공서에서 소요된 인건비와 사업자제시안에서 제시된 금액의 차이를 가지고 가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
- 총 263개의 사업 중 관민경쟁입찰이 이루어진 사례는 4건이며 그 규모도 그다지 크지 않음.
 - 관민경쟁입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성청의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라 사료됨.
 - 또한 시장화테스트를 1자 응찰 구조 또는 기존의 독과점 구조에서 경쟁을 도입하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 및 낮은 비용을 가져오기 위한 것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그 미래는 밝을 것이라 사료됨.